

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
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06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8월 14일

발의자 : 경수현, 권영애, 김육영, 박영섭,
양순임, 이호건, 임태근, 정기혁,
정윤주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
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
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나.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다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「보행안전 및 편의

증진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

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,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도로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8. 20. ~ 2025. 8. 26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
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보도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.
2. “점자블록”이란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성북구”라 한다)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

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
 2.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
 3.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
-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·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)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표준설치안) 구청장은 점자블록 설치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

라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표준설치안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